



슬로바키아 투자 및 경영 가이드 2009

최근 몇 년 사이에 슬로바키아공화국은 확고한 경제성장과 대량의 외국인투자 유입을 이룩하였다. 이 투자 가이드는 이러한 발전의 기본적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요 분야의 관련 슬로바키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투자 가이드의 제1장은 슬로바키아공화국에 대한 기본정보 및 근래의 경제개혁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부상한 세 가지 이유, 즉 사업자 친화적인 조세제도,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저가의 숙련된 노동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는지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부동산 매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사업활동을 종결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투자 회수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법정소송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개관

1.1 슬로바키아공화국에 대한 기본정보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면적 49,000km²에 전체인구 540만의 나라이다.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슬로바키아공화국은 폴란드(597.5 km), 우크라이나(98 km), 헝가리(679 km), 오스트리아(127.2 km), 그리고 체코공화국 (265 km) 등의 접경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4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는 슬로바키아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국경과 근접해 있고, 수도 비엔나와 부다페스트로부터 각각 65km, 20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위치는 반경 1,000 km의 지역에 3억5,000만이 넘는 고객들로 이루어진 잠재적인 시장을 형성한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또한 발칸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라 불리기도 한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은 OECD, WTO, NATO, UNESCO, WHO, INTERPOL 및 기타 여러 국제조직의 회원국으로서 2004년 5월 1일과 2007년 12월 21일에 각각 유럽연합과 셴겐조약에 가입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유로화지역에 가입하여 30.1260 SKK/유로의 환율로 유로화 통화를 출범하였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대륙법계 국가로 프랑스 및 독일 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근래에 들어서는 유럽법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1.2 경제성장을 이끈 근래의 경제개혁

슬로바키아는 1990년대 중동부유럽을 강타했던 경제개혁운동에 다소 뒤늦게 가담한 국가이다. 하지만 1998년도의 총선거를 통하여 주요 은행과 공익사업체를 민영화하고 재정적 투명성 및 통제를 한층 향상시킨 구조개혁을 거행하면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온 외국인투자자들이 여러 핵심적인 기존 국유기업에 중요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개혁은 2002년 총선 후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대규모의 광범위한 개혁을 거행하면서 국가재정, 근로, 교육, 건강 및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개혁은 바로 간단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사업자 친화적인 19% 단일세제의 도입으로, 이는 2004년 경제개혁의 초석이 되었다고 널리 평가 되었다.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력 및 경제 다양성의 급속 증대와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그 깊이와 속도에 찬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여러 다른 자료 가운데서도 세계은행의 2005년도

기업환경보고서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을 최근 몇 년간 투자환경 개선에 있어 최고의 개혁국가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OECD에서 최근 발표한 수익통계자료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조세제도는 모든 OECD 국가 중 6번째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지난 몇 년간 슬로바키아 경제는 확고한 성장과 최고의 GDP 성장률의 길을 밟아오고 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GDP 성장률은 8%, 2008년도의 GDP 성장률은 6%을 웃돌았고 2009년도 2%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 가지 주요 관심사

2.1 사업자 친화적 조세제도

2.1.1 조세제도 개관

2004년 조세개혁은 상당히 경쟁력 있고 사업자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도입시켰다. 이러한 제도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19% 단일세제이고 상속증여세(2004년 1월 1일부터)와 부동산이전세(2005년 1월 1일부터)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세금이 폐지되었으며,¹ 나아가서는 2004년 1월 1일부로 수령자 또는 납세자가 EU 거주자인지의 여부, 모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의 크기에 상관 없이 배당세가 폐지되었다.

표 1: V4 국가들의 기본 세율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법인소득세	19 %	20 % ²	20 % ³	19 %
개인소득세	19 %	15 %	18 – 36 %	18 – 32 %
부가가치세	19 %	19 %	20 %	22 %

슬로바키아의 조세제도는 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부동산세, 자동차세, 지방자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연관성이 있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다루기로 한다.

¹ 슬로바키아 소득세법 (Coll. on Income Tax). 595/2003법 제3조2항 a) 및 제12조7항b)

² 세율은 2010년에 19%로 각각 격감된다.

³ 세율 자체는 16%이지만 유효세율 20%가 적용되면서 4%의 자유노조세 또한 납부해야 한다.

2.1.2 법인소득세

슬로바키아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르면, 법인소득세는 법인사무실 또는 유효한 영업장소가 슬로바키아공화국 내에 위치한 법인에게 징수된다. 슬로바키아 소득세법은 유효한 영업장소를 법정 감독기구의 경영상 또는 사업상의 결정이 채택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들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를 갖는다. 기타 영구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⁴과 같은 주체에게는 한정된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연도는 월력연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슬로바키아 소득세법은 집단 과세에 대한 특별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 슬로바키아 조세제도에 해당되는 각 기업집단은 개별적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개인소득세

슬로바키아 소득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소득세는 슬로바키아공화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슬로바키아공화국에 해당연도 내에 지속적으로 또는 합계 183일 이상을 거주한 자연인 (슬로바키아 과세주민)에게 징수된다. 슬로바키아 과세주민은 전세계범위 내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갖는다.

기타 자연인(슬로바키아 비과세주민)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개인소득으로는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 법정기능을 수행한 것에 대해 슬로바키아회사로부터 받은 소득, 또는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행한 자문업무나 기타 유사한 활동으로 인한 소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1.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법⁵이 적용된다. 슬로바키아 내에 영업장소 또는 관련 설비가 있는 슬로바키아 과세주체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액이 35,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자율적인 등록 또한 가능하다.

⁴ 슬로바키아 소득세법 제16조 2항에는 영구시설을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회사가 끊임없이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영구적인 장소 또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상업등록기관에 등록된 지점이거나 법적 신분이 없는 미등록 단위일 수도 있다. 영구시설은 또한 슬로바키아에서 연속적인 12개월 내에 6개월 이상 일회성 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활동, 장소 또는 시설에 의해 설립될 수도 있다.

⁵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 (Act No. 222/2004 Coll. on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세율은 19%인데, 2008년 1월 1일부터는 10%의 부가세 저율제도가 의료 및 기타 의약품, 도서 및 음반 등에 적용되고 있다.

2.1.5 과소자본세제

2010년 1월 1일부터 2004년도 조세개혁에 의해 폐지되었던 과소자본세제가 재도입된다. 과소자본세제는 관계자간에 제공된 신용대출과 대부에 적용된다.⁶

새로운 자본세제에 따르면, 과세기간 만료 전에 보고된 슬로바키아 회사의 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관계자간 신용대출 및 대부의 이율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규칙들은 슬로바키아 주체의 연평균 관계자간 대부금액이 3.319.4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1.6 이전 가격

슬로바키아 소득세법 제17조 5항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주체와 그의 관련 외국당사자간의 가격은 반드시 법인소득세의 목적을 위하여 공정시장가치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세당국은 과세기준을 조정할 권리가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관련 외국당사자는 소득세법 제2조의 n) - r)에 경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연관된 외국당사자나 여타의 방식으로 연관된 외국당사자를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관계가 당사자들이 과세기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관계를 수립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지분, 통제, 또는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나 두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의 공통적인 통제 또는 경영 하에 놓인 경우를 가리킨다. 지분 또는 통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식자본이나 의결권에 25%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2.1.7 이중과세 방지 조약

조세제도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들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전세계 61개 국가와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이 조약들은 대부분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이중과세 방지 조약은 2001년 8월 27일에 체결하여 2003년 7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⁶ 과소자본세제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이나 대부의 제공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부 수령자 주식자본의 최소 25%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 당사자들은 관계자로 간주된다.

2.2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

2.2.1 유럽연합법 상의 투자 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는 슬로바키아공화국에게 있어서 아주 유리하면서도 심각한 논점이지만, EU의 구성원으로서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유럽연합의 규칙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마땅하다.

유럽연합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는 유럽연합 자체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경쟁을 곡해하고 회원국간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없다. 정부보조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직접 및 간접 공공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투자 인센티브란 경쟁을 곡해시키는 선형적 명제임을 알 수 있다.

표 2: 투자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투자율

브라티슬라바	0 %
서부 슬로바키아	40 %
중부 슬로바키아	50 %
동부 슬로바키아	50 %

그러나 자체시장 내에서의 경쟁촉진이 유럽연합의 유일한 정책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빈곤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지역불균형을 제거하는 것 또한 정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더불어 정부보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여러 면제사항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주요한 면제사항으로는 아마도 유럽연합의 평균수치에 비해 삶의 질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실업률이 심각한 지역의 경제발전촉진을 위한 지역보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차원의 보조는 특정 지리학적 위치로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투자에 대한 지원이나 고용창출 등의 보조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정부보조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보조금의 부여가 투자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위원회는 어느 지역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에 대해서 결정을 해왔다. (표 2 참고.) 투자 인센티브의 형태로 부여된 투자의 비율은 중형기업⁷의 경우 10% 증가하였고 소형기업⁸의 경우에는 20%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⁹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투자규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⁷ 이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0%로 변경된다.

⁸ 250명보다 적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대차 대조표 합계 4,3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⁹ 50명보다 적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 및/또는 대차 대조표 합계가 1,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2.2.2 슬로바키아법상의 투자 인센티브

최근까지 슬로바키아공화국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접근방식을 채택하였었는데,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종류와 금액 및 투자자의 자격요건 등은 대개 정부와 투자자간의 협상으로 결정되곤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굉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프로젝트의 특정구조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 반면 투명성과 확실성이 결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새 투자인센티브법¹⁰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인센티브법은 제조업, 기술센터, 전략적 서비스 센터, 관광사업 등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투자 인센티브 적격 투자항목을 규정하였다. 각 항목 내에서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 유·무형 자산 취득에 대한 현금보조; 법인소득세 공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헌분담액; 할인가격의 부동산 이전.

투자인센티브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오직 신규 생산공장의 설립, 기존 공장의 확장 또는 생산의 다양화, 또는 총체적 생산과정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최소 26,555,135.10 유로를 유·무형 자산 취득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¹¹ 인센티브는 취득 유·무형자산 가치의 최소 60%에 해당하는 가치의 새로운 기술설비 취득 시에도 부여될 수 있다.

기술센터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는 신규 기술센터의 개발이나 기존 기술센터의 확장에만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최소 1,327,756.75 유로를 유·무형자산¹² 취득에 투자하고 60% 이상의 직원이 학부학위를 소지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투자자의 적격 비용 중 최소 25%는 정부보조금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조달해야 하고, 투자자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영업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투자보조를 통해 취득한 자산을 최소 5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¹⁰ 슬로바키아 투자인센티브법 (Act No. 561/2007 Coll. On Investment Incentives).

¹¹ 이 금액은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투자할 경우 13327756.75 유로로 감소되고 실업률이 평균보다 최소 50% 높은 경우에는 638783.77 유로(2009년 4월 1일부터 3319391.89 유로)로 감소된다.

¹² 최소 50%는 투자자 소유의 자원이어야 한다.

2.3 저가의 숙련된 노동력

2.3.1 유효 노동력

260만 명의 노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은 강력한 기계공학 제품생산의 전통을 갖고 있고, 2008년도의 실업률은 9.6%로 유럽연합에서 제3위의 높은 것이었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유효 노동력을 분석할 때는 200,000명이 넘는 해외거주 노동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 V4 국가들의 실업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슬로바키아	18.7	17.6	18.2	16.3	13.4	11.1	9.6
체코	7.3	7.8	8.3	7.9	7.2	5.3	4.4
폴란드	20.0	19.7	19.0	17.8	13.9	9.6	7.1
헝가리	5.8	5.9	6.1	7.2	7.5	7.4	7.9

출처: 유럽공동체 통계청

표 4: 2006년도 슬로바키아공화국 지역별 실업률

	실업률 (%)		고용가능 근로자 수	
	2006	2007	2006	2007
Bratislava 지역	4.3	4.2	14,400	14,100
Trnava 지역	8.8	6.5	25,400	18,700
Trencin 지역	7.1	5.7	21,200	16,700
Nitra 지역	13.2	10.7	45,100	37,400
Zilina 지역	11.8	10.1	39,400	33,600
B. Bystrica 지역	21.1	20	68,600	64,900
Presov 지역	18.1	13.8	68,000	51,700
Kosice 지역	20.3	15.9	71,300	54,700

출처: 슬로바키아공화국 통계청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실업률에 있어서 큰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발달한 슬로바키아 서부(Bratislava, Trnava 및 Trencin 지역)에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갖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 중동부(Banska Bystrica, Kosice 및 Presov 지역)의 실업률은 가장 높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량이 서부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2006년까지 Bratislava 자체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73.7%를 유입하였던 반면, 2순위를 차지했던 Zilina 산업지역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량의 13.4%만을 차지하고 있다. 유효 노동력에 대한 어려움이 Bratislava와 Trnava 지역의 주요 투자자들에 의해 보고되었고, Zilina 지역에 있는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그 지역의 실업률이 너무 낮아 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00 km 떨어진 곳에서부터 근로자들을 운송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2.3.2 인건비

슬로바키아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와 비슷한 생산력을 갖고 있지만 인건비가 이들보다 30%나 저렴하고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들보다 6배나 저렴하다.

표 5: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의 인건비

	유로 / 시간			유로 / 월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슬로바키아	4.8	5.3	6.4	701	775	927
폴란드	5.6	6.0	6.8	818	889	997
헝가리	6.1	6.3	7.1	944	947	1,055
체코	6.6	7.1	7.9	954	1,028	1,201
프랑스	29.3	30.3	25.3	4,296	4,382	3,220

출처: 슬로바키아공화국 통계청

슬로바키아 국내에서는 인건비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 Bratislava와 Kosice 지역이 가장 높고 Presov, Nitra 및 Banska Bystrica 지역은 가장 낮다.

표 6: 슬로바키아공화국 국내의 지역별 인건비

	유로 / 시간				유로 / 월			
	2004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8
Bratislava 지역	5.7	5.6	6.5	7,6	827	951	877	944
Trnava 지역	3.9	4.2	4.8	6,1	627	698	636	676
Trencin 지역	3.6	4.2	4.7	5,7	610	676	583	630
Nitra 지역	3.7	4.0	4.3	5,1	587	616	551	606
Zilina 지역	3.8	4.2	4.6	5,8	603	668	589	646
B. Bystrica 지역	3.9	4.1	4.4	5,3	606	628	560	600
Presov 지역	3.4	3.8	4.1	5,0	554	590	498	546
Kosice 지역	4.5	4.9	5.4	6,5	689	779	628	672

출처: 슬로바키아공화국 통계청

2.3.3 노동법 개관

슬로바키아 노동법 제42조 1항의 규정¹³에 의하면 고용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서면 고용계약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슬로바키아 노동법은 고용계약 외에 근무성과계약,¹⁴ 근무활동계약,¹⁵ 임시학생고용계약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계약들은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고용계약은 정해진 기간 또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다. 기한부 고용계약은 누적 3년으로 체결될 수 있고, 3년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 한번만 연장 또는 체결이 가능하다.¹⁶ 3개월 간의 견습기간이 고용계약에 합의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견습기간 동안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고용계약을 어떠한 사유로든지 또는 아무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노동법 제85조 5항에 따르면 주간 최장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일부 고도거나 위험한 직업 종사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짧은 33.5시간이 적용된다. 시간 외 근무는 주간 8시간, 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슬로바키아 노동법 제59조 1항에 따르면, 고용계약은 당사자들의 상호합의, 즉시 해지, 그리고 통지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슬로바키아 노동법 제68조 1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인이 고의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고용인이 고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된다.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최소 법정 통지기간 2개월 이내에 서면통지를 통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어떠한 사유 또는 아무런 사유가 없는 통지를 할 수 있는 반면, 고용주는 노동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고용인에게 통지를 할 수 있다. 동법 제63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의 사업 또는 그 일부가 청산되었거나 재배치되었을 경우.

¹³ 슬로바키아 노동법(Act No. 311/2001 Coll. the Labour Code).

¹⁴ 슬로바키아 노동법 제226조에 따르면, 근무성과계약은 특정 직무 또는 직책의 수행성과만을 위해, 예상 업무량이 해당 연도 내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체결되어야 한다.

¹⁵ 슬로바키아 노동법 제228a조에 따르면, 근무활동계약은 근무활동이 주당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 체결될 수 있다.

¹⁶ 기한부 고용계약은 슬로바키아 노동법 제48조 4-6항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만이 3년이 넘는 기간으로 체결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직무, 기술설비의 변경, 업무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인력감원, 또는 기타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고용인이 잉여노동력으로 되는 경우.

건강검진에 따라 고용인이 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예전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고용인이 합의된 직무의 이행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서면 시정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이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고용인이 진행 중이나 덜 심각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잉여인력 집단해고는 고용주가 위 가)와 나) 항을 사유로 최소 20명의 고용인과의 고용관계를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지하는 경우로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고용주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고용인 및 국가고용청(National Employment Office)와 직접 잉여인력 집단해고에 대하여 협상하고 서면으로 해지 사유, 집단해고의 구조, 일정 및 해당 고용인의 수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76조 1항에 의하면, 고용인은 위에 열거된 가)~다)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월평균임금 최소 2배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를 위해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은 월평균임금 최소 3배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객관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슬로바키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임시고용국(Agency of Temporary Employment)에 의해 임시적으로 선임된 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선임제도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고용인은 임시고용국에 의해 고용되어 그 후에 고용주에게 합의한 기간 동안 배당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성수기 동안에 급증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투자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3. 사업의 시작

3.1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진출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형태들은 상법¹⁷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이나 유럽연합법에 규정된 유럽회사 등이 있다.¹⁸ 유한책임회사(슬로바키어로: spoločnosť s ručením obmedzeným; 약칭: s.r.o.)가 가장 널리 채택되는 기업형태이므로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업형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¹⁷ 슬로바키아 상법(Act No. 513/1991 Coll. the Commercial Code).

¹⁸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of a European company (SE).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외국 자연인이나 법인은 다른 외국인 또는 슬로바키아인과 함께 또는 단독 주주로서 슬로바키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 자연인과 법인은 슬로바키아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차별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상법 제108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유로의 최소 등록자본금이 필요하다. 동법 제111조 1항은 등록자본금의 최소 50%가 회사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상업등록기관(Commercial Register)에 제출하기 전에 완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불문하고 단독 주주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첫째로 단독 주주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다른 유한책임회사의 단독 주주가 될 수 없고, 둘째로 자연인은 3개 이상의 회사의 단독 주주가 될 수 없다. 주주의 최대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체는 주주회의, 상무이사 및 감독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주주회의는 모든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무이사의 임명과 해임, 회사정관과 사규의 수정, 등록자본금의 증감 등 모든 중대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이다. 슬로바키아 상법은 주주총회의 개별적인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개최되고 구성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무이사는 회사의 법정대표인데, 하나의 회사는 여러 명의 상무이사를 둘 수 있지만 오직 자연인만이 상무이사로 임명될 수 있다. 여러 명의 상무이사가 있는 경우, 이들은 회사정관에서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각각 회사를 대리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이사회의 설립은 선택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주주들은 회사정관에 감독이사회 설립을 결정할 수 있다. 감독이사회는 주주회의에서 임명된 최소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정관의 서명 후에는 필요한 상표라이센스의 취득절차가 있고, 마지막으로 해당 관할 지방법원의 상업등록기관에 회사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 중 유의할 부분은 유한책임회사가 상업등록기관에 등록을 한 후에 법인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슬로바키아는 자본의 수출과 수입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이윤의 본국 송환은 어떠한 통화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¹⁹ 슬로바키아 외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지사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 대금, 보증 및 비거주자와 연관된 수금, 지급 또는 양도, 그리고 해외 계좌 개설 및 그 잔액에 대한 사항들은 반드시 슬로바키아국립은행에 통지되어야 한다.

¹⁹ 슬로바키아 외환법(Act No. 202/1995 Coll. The Foreign Exchange Act) 제7조.

3.2 영업장소의 설립

3.2.1 부동산의 매입

고대로마의 법언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토지의 일부 (superficies solo cedit)”는 슬로바키아 법 제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토지와 건축물은 다른 주체에 의한 개별적인 취득이 가능하다.

슬로바키아 민법전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방식으로 서면계약, 승계, 정부기관의 결정 또는 법이 정한 기타 사유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동산은 서면계약에 의해 취득이 된다. 부동산이전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권은 토지등기소에 구성적 등기를 한 후에만 취득이 되고, 등기절차에는 15일이 소요된다.

토지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것은 다르게 증명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있다. 이 때문에 토지등기소에 유효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도 어느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10년의 취득시효기간 규정에 따라 사전에 최근 10년간의 소유권 양도에 대한 상세한 실사를 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1일자로 슬로바키아 외환법 제19조 1항에 도입된 원칙에 따라, 외국 자연인과 법인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한가지 예외는 슬로바키아공화국가 단독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농경삼림지이다.

3.2.2 영업장소의 임대

외국 자연인과 법인은 슬로바키아공화국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대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지 5년 이상 존속하는 임대계약만이 토지등기소에 등기할 수 있고, 이외에도 비 주택지는 사용허가증에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2.3 건축 및 재건축

슬로바키아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관할 건축물관리국(보통 건축물이 설립될 지역의 시청)에서 발급하는 건축물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 허가증은 건축물 설립예정 토지의 소유자나 임대계약 또는 지역권에 의해 토지에 특수한 권리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건설절차는 지역구획 허가, 건축 허가 및 사용 허가 세 가지 개별적인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구획 허가과 건축 허가가 하나의 절차로 병합될 수도 있다.

지역구획 허가절차 중, 건축물관리국은 명확한 매개변수를 갖춘 특정 건축물이 특정지역에 설립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지역구획허가증은 시 정부와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지역구획계획을 준수하여 그에 따라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 중간 또는 이전에 건축물관리국은 기타 구체적인 측량을 요구할 수도 있다.

건축 허가절차 중에 건축물관리국은 계획서류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한다. 건축학상의 디자인작업은 계획서류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전단계에 발급된 지역구획허가증의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역구획허가증과 건축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 건축물관리국은 여러 다른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중 어떤 기관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인접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도 건축 허가절차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나 항소에 의해 관련 절차는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건축허가증 취득 후에는 건설작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 건설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용허가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슬로바키아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유효한 사용허가증 없이 사용될 수 없다. 지역구획과 건축 허가절차 전체는 다른 요소와 문제에 따라 약 6~12개월 정도 사이의 시간을 소요한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일부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법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²⁰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히 복잡한 행정절차로 약 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환경영향평가가 법에 의해 요구되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끝에 발급되는 최종의견서 없이는 지역구획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사업의 종결

4.1 개관

슬로바키아 상법은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사업활동을 종결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투자회수 내지는 퇴출 장치를 제공한다. 첫째로 가장 쉬운 방식은 슬로바키아 회사의 영업지분을 다른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또한 회사의 자산유무에 따라 슬로바키아 회사를 청산에 의하거나 청산을 거치지 않고 해산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산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는 회사의 해산 뒤에 파산절차가 따르는지의 여부는 해당 회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²⁰ 슬로바키아 환경영향평가법(Act No. 24/2006 Coll.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활동 목록은 부록8에서 찾을 수 있다.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슬로바키아 상법 제68조 1항에 따르면, 회사는 해당 관할지방법원의 상업등록기관에서 삭제되는 일시부터 소멸된다.

유한책임회사가 가장 보편적이고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기업형태이므로 이 장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퇴출방식을 다루고자 한다.

4.2 영업지분의 양도

회사정관에 특정하지 않은 이상 주주는 반드시 주주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그가 소유하는 영업지분을 같은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영업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다. 상법전 제115조 2항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정관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영업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정관을 기초할 때 위 규정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서면계약과 양수도 당사자들의 서명이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한다.

4.3 회사의 해산

4.3.1 청산에 의하지 않는 해산

슬로바키아 회사가 어떠한 자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청산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해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관할지방법원의 상업등록기관에 회사 삭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삭제신청서에는 주주회의에서 통과된 회사해산에 관한 결의가 첨부되어야 한다.

슬로바키아회사의 파산절차 종료 후에 자산이 부족하거나 자산이 없어서 파산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청산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파산법원은 해당 관할지방법원에 유효한 파산판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법원이 회사를 상업등록기관으로부터 삭제시키도록 한다.

슬로바키아회사의 자산과 채무가 법적 승계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청산에 의하지 않는 해산이 가능하다. 슬로바키아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자산과 채무는 기업 합병(zlúčenie), 경영권 인수(splynutie)와 분할(rozdelenie) 세 가지 경우에 법적 승계인에게 양도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하나 또는 더 많은 해산회사의 자산이 이 회사들의 법적 승계인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회사에게 양도되고, 경영권 인수의 경우에는 최소 2개의 해산된 회사의 자산이 이 해산회사들의 법적 승계인으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에게 공동으로 양도된다. 분할의 경우에는 하나 또는 여럿의 해산회사의 자산이 여러 다른 회사로 분리되어 양도된다.

이 밖에도 법은 합병계약서 초안, 인수계약서 및 분리계획이 참여 회사들의 주주회의에서 승인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업등록기관으로부터의 해산회사 삭제신청서와 합병, 경영권 인수, 분할의 상업등록기관 등록신청서는 모든 참여 회사들이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3.2 청산에 의한 해산

회사의 자산이 아직 법적 승계인에게 양도되지 않았고 파산절차가 시작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산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된다. 청산의 주요 목적은 회사의 모든 경제적 관계를 완전하고 확실하게 안정시키는데 있다.

회사 해산에 대한 주주결의가 채택되는 순간에 회사의 청산은 시작된다. 회사의 대리권은 주주회의에 의하여 상무이사로부터 임명된 청산인에게 이전된다. 청산인은 회사의 모든 채권자에게 청산개시를 알려야 하고 이러한 정보와 채권자들에게 최소 3개월의 기한 내에 청산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업고시(Commercial Bulletin)에 공시하여야 한다. 권리청구가 충족된 후 남은 자산은 주주회의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간에 분배된다. 이어서 청산인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의 상업등록기관에 회사 삭제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분쟁해결

5.1 중재

5.1.1 국내중재판정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중재에는 1985년 UNCITRAL 모델법을 기초로 한 슬로바키아 중재법²¹이 적용된다.

슬로바키아 중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계약의 중재조항이나 중재계약을 통하여 정의된 법적 관계(계약성의 여부를 떠나)에 있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또는 어떠한 분쟁도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동법은 중재계약은 무효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최소한 중재절차 개시 전에 중재판정부에 공동선언을 통하여 경정할 수 있다.

²¹ 슬로바키아 중재법(Act No. 244/2002 Coll. on Arbitration Procedure).

슬로바키아 중재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법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분쟁만이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동법은 중재범위에서 제외된 분쟁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개인의 신분, 판결의 집행 및 파산 및 구조조정 절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들이 있다.

중재절차가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진행될 때, 이 중재는 국내중재에 해당된다. 중재절차는 당사자들이 선정한 하나 또는 더 많은 중재인에 의하여 진행되거나 중재판정부에 의해 진행된다.

주의할 점은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합의한 법질서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질서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다. 중재판정부는 오직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형평성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유효한 법원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동등한 조건하에 집행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다른 중재인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재판정의 법적 거부사유는 대부분 기본적인 절차규정을 위반한 경우이고,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부적절한 법적·사실적 해석 또는 적용을 사유로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1.2 외국중재판정

슬로바키아공화국은 1958년 6월 10일에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함)의 협약국이다.²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또한 슬로바키아 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양법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뉴욕협약이 우선한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뉴욕협약 가입 당시 협약 제1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뉴욕협약은 다른 협약국의 중재판정에만 적용이 된다. 비협약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뉴욕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오직 그 국가가 슬로바키아 중재판정에 대하여 뉴욕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중재판정이 슬로바키아공화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내려진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에 속한다. 외국중재판정은 국내중재판정과 동등한 조건하에 집행되어야 하고, 그 승인에 있어서도 특별한 결정이 요구되지 않아 관할권을 가진 집행법원이 해당 외국중재판정을 국내중재판정처럼 승인한다. 슬로바키아 중재법에 규정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들은 뉴욕협약 제5조의 규정과 일치한다.

²² 뉴욕협약은 외무부령 No. 74/1959 Coll.에 의하여 공시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1959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5.2 소송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대법원, 8개의 지역법원(regional courts) 및 54개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s)으로 이루어진 2심 법원제도를 갖고 있다. 법원제도는 나아가 군사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충이 된다.



지방법원은 제1심 법원이고, 항소법원인 지역법원은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이다. 대법원은 항소법원과 항고심사법원(appellate review court)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법원이다.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구로서 제1심 법원이 될 수 없고, 민사사건 외에 형사사건도 해결한다.²³

민사소송절차는 슬로바키아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상사, 근로, 가사 및 경제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행정기관 결정의 합법성도 심사한다.

지방법원과 지역법원이 제1심 법원으로서 심리하는 사건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대법원과 지역법원이 항소법원으로서 심리하는 사건은 3명 또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슬로바키아 민사소송법은 항소와 같은 일반적인 구제수단 과 항고심사(appellate review), 특별항고심사(extraordinary appellate review), 재심(reopening of the case) 등의 특별한 구제수단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심각한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재가 일반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의할 것은 패소 당사자는 소송비용 이외에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²³ 형사소송절차는 슬로바키아 형사소송법(Act No. 301/2005 Coll.)의 적용을 받는다.

6. 결론

1998년 총선 이후 슬로바키아공화국은 국가재정, 근로, 교육, 건강 및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대규모의 경제 사회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 이후에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슬로바키아공화국 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이래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로바키아를 발견하고 급성장하는 동유럽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물론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나라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일정한 주요 투자요소는 투자자들이 보편적으로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19% 단일세제를 갖고 있는 사업자 친화적인 조세제도, 의미 있는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저가의 숙련된 노동력은 슬로바키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서부 및 북부 슬로바키아 지역에 위치한 일부 투자자들이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지면서 증가하는 유효 노동력 부족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보고를 반영한 결과로, 투자자들은 실업률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다른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또한 주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 되어가고 있다. 2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60여 개의 한국회사와 2백만 유로가 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이란 통계수치를 보았을 때, 슬로바키아공화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가 되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Tvarožkova 5
814 99 Bratislava 1
Slovakia
Tel.: +421-2-5720 1717
Fax: +421-2-5720 1777
Skype: ulcbratislava
E-mail: office@ulclegal.com

이탈리아, 브레샤

Via Val Giudicarie 4
251 23 Brescia
Italy
Tel.: +39-030-221 932 33
Fax: +39-030-221 932 02
Skype: ulcbrescia
E-mail: brescia@ulclegal.com

우크라이나, 키예프

172 Gorkogo St., Suite 1316
031 50 Kyiv
Ukraine
Tel.: +38-044-521 21 10
Fax: +38-044-529 17 32
Skype: ulckyiv
E-mail: kyiv@ulclegal.com

www.ulclegal.com